##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58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김위상·김선교·임이자

김승수 · 박정하 · 박충권

김종양 • 나경원 • 이종배

박성민 · 구자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1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이 투자비용 중에는 안전·보건 업무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사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산업재해예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시설투자비용, 안전·보건업무 위탁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해예방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9조 에 따른 보건조치를 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산업재해예방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예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다음 전후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용으로서 시설투자비용, 안전보건업무 위탁수수료, 컨설터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 행	개 정 안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3  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으로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화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3 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제25조의8(산업재해예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시설투자비용, 안전·보건업무 위탁수수료, 컨설팅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용(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해예방비용"이라 한다)이 있는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3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발생한 비용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산업재해예방비용의 계산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